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호 262

제출연월일 : 2007. 10. 2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품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
나.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,「건설기술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•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7. 9. 14. ~ 10. 4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"를 "「건설기술관리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"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"동조 제2항 각호의 1과"를 "같은 조제2항 각 호와"로 한다.

제5조중 "현장기동반(이하 "기동반"이라 한다)"을 "현장기동반"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수수료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현장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
 - 2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.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9조제1항중 "기동반"을 "현장기동반"으로 한다.
- 제명 "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"를 "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- 제3조제1항중 "건설기술관리법"을 "「건설기술관리법」"으로, "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"을 "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- 제3조제2항중 "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"을 "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- 제6조제1항중 "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"을 "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"으로 한다.
- 별표 1중 "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"를 "「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건설기술관리법령</u>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제3조(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등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 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1항 각호 및 <u>동</u> 조제2항 각호의 1과 같다.	
제5조(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)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 행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사용자재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품질시험 및 검사등의 적정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<u>현장기동반(이하 "기동반"이라 한다)</u> 을 운영할 수 있다.	
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	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
제9조(시험에 대한 협조) ①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<u>기동반</u>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. ② (생략)	<u>현장기동반</u>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[일부개정 2007.5.17 법률 제8435호]

제130조 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37조 (수수료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-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.

※ 지방자치법 [일부개정 2007.4.6 법률 제8338호]

제130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 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6.1.11>

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건설관리기술법[일부개정 2007.5.25 법률 제8486호],

第24條 (建設工事의 品質管理) ①건설공사의 발주자,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(이하 "품질관리계획"이라 한다)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(이하 "품질시험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16, 2004.12.31>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01.1.16, 2004.12.31>
-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,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1.1.16, 2004.12.31>
-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·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1.1.16>
-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1.1.16>